



제410회국회(정기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진선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4996호)

2023.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경호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1
III . 주요내용	2
IV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진선미의원 등 13인

나. 발 의 일 : 2023. 10. 4.

다. 회 부 일 : 2023. 10. 5.

II. 제안이유

해외건설업 법인이 중동에 진출하는 경우 종전에는 중동국가의 현지화 정책에 따라 현지 자회사를 설립하게 되었고, 현지 자회사는 자금조달 능력이 없어 공사이행보증 책임이 있는 국내 모회사가 건설 및 운영자금을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임. 그런데, 해외건설업 플랜트 공사에서 거액의 손실이 발생하여 현지 자회사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짐에 따라 국내 모회사는 해당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상환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현행 세법상으로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의 경우 과세실무상 현지 자회사의 파산이나 청산의 경우에만 대손금 손금산입이 가능한데, 현지 국가제도의 절차상 어려움으로 파산이나 청산이 가능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대여금을 손실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임. 오히려 국내 모회사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이 라는 이유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이에 대한 세금만 추가 부담하게 되는 억울한 처지에 있음.

특히, 국내 모회사가 해외지점으로 진출하였으면 동일한 손실에 대하여 제한 없이 손금으로 인정되고 인정이자에 대한 세금도 추가 부

담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현지법인을 설립한 국내 모회사에 대한 이러한 세금부담은 부당한 차별에 해당함.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장기간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을 결산상 장부에서 제거하고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여 해외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국내 모회사의 세무상 불합리와 부당한 차별을 시정하려는 것임.

Ⅲ. 주요내용

가. 내국법인이 지분의 100분의 9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해외자회사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자본잠식으로 재무상태가 사실상 파산과 유사한 상태에 있는 해외자회사를 대상으로 명시함(안 제39조의2 제1항).

나.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 말 현재 5년 이상 회수되지 아니한 대여금 잔액 및 미수이자 채권으로서 2 이상의 회계법인이 회수불능으로 확인한 채권을 대상으로 함(안 제39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

다. 해당 대여금 등을 내국법인이 결산목적상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하고, 이를 내국법인의 외부감사인이 확인하도록 함(안 39조의2제2항제3호).

IV. 검토의견

1. 해외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등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윤영석·조해진·진선미 의원안, 정부안)

	윤영석의원안	조해진의원안	진선미의원안	정부안
□ <u>신 설</u>	안 제39조의2	안 제39조의2	안 제39조의2	안 제104조의33
○ 대상				
- 국내 모회사	①해외자원개발사업자 ②해외건설사업자	해외건설사업자	해외건설사업자	해외건설사업자
- 해외 자회사	출자지분 90% 이상	출자지분 90% 이상	출자지분 90% 이상	시행령으로 위임 (출자지분 90% 이상 으로 규정 예정)
○ 내용	회수곤란 대여금 등 채권잔액 손금산입 허용	회수곤란 대여금 등 채권잔액 손금산입 허용	2026.12.31.까지 회 수곤란 대여금 채권 제각 시 해당 채권 손금산입 허용	회수곤란 대여금 등 (2022.12.31. 이전에 지급한 것) 대손충당 금으로 적립 시 손금 산입 허용
-채권범위	대여금, 미수이자, 용역대가	대여금, 미수이자	대여금, 미수이자	대여금, 미수이자
-회수곤란	10년 이상 자본잠식 상태	대여금을 제각하여 대손금을 손비로 계상한 사업연도와 그 직전 10년간 자 본잠식 상태	대여금을 제각하여 대손금을 손비로 계상한 사업연도와 그 직전 10년간 자 본잠식 상태	회수기일로부터 5년 경과 사업연도말 자본 잠식 상태
-자본잠식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에서 직전 사 업연도말 부채총액을 뺀 자기자본이 영(零) 이거나 부(負)인 상태	둘 이상의 회계법 인의 확인 및 외부 감사인의 감사의견 필요	둘 이상의 회계법 인의 확인 및 외 부감사인의 감사 의견 필요	시행령으로 위임
○ 대손발생	대손금과 손금산입 상당액을 상계	-	-	충당금 적립금과 상계
○ 적용시기	2026.12.31. 이전 손금산입분부터 5년간 손금산입	손금산입하는 사업연도부터 5년간 손금산입	제각한 사업연도부터 5년간 손금산입	2024.1.1.부터 10년간 매년 10% 손금산입
○ 부당행위 계산부인	미 적용	적용	적용	적용

* 윤영석의원안 2023. 6. 29. 발의(의안번호 22977), 조해진의원안 2023. 8. 9. 발의(의안번호 23760), 진선미의원안 2023. 10. 4. 발의(의안번호 24996), 정부안 2023. 9. 1. 제출(의안번호 24163)

□ 4건의 개정안은 해외자회사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모회사에서 대여한 금전 등의 회수가 어려운 경우 해당 채권 평가금액에 대한 손금산입을 허용함으로써 해외사업에 참여하는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려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음.

- 3건의 개정안(조해진·진선미 의원안, 정부안)은 해외자회사에 90% 이상의 지분을 출자한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윤영석의원안은 이와 함께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를 적용대상으로 추가하고 있음.

또한, 3건의 개정안은 특례적용 채권의 범위를 대여금, 미수이자로 한정하고 있으나 윤영석의원안은 용역대가를 포함하고 있음.

- 손금산입을 위한 요건과 관련하여 윤영석의원안은 ‘10년 이상의 자본잠식 상태일 것’, 조해진·진선미의원안은 ‘대여금을 제각하여 대손금을 손비로 계상한 사업연도와 그 직전 10년간 자본잠식 상태일 것’, 정부안은 ‘회수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 사업연도말 자본잠식 상태일 것’을 각각 규정하고 있음.
- 손금산입의 방식 및 대손처리와 관련하여 윤영석의원안은 대손금과 손금산입 상당액을 상계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있으며, 조해진·진선미의원안은 회수곤란 대여금 등을 제각하여 손금산입하여 사실상 대손의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정부안은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대손발생시 충당금 적립금과 상계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있음.

- 손금산입의 적용시기와 관련하여 윤영석의원안은 '26.12.31. 이전 손금산입분부터 5년간, 진선미의원안은 제각한 사업연도부터 5년간, 조해진의원안은 손금산입하는 사업연도부터 5년간, 정부안의 경우 '24.1.1.부터 10년간 매년 10%씩으로 규정하고 있음.

□ 내국법인이 해외 영업활동을 하기 위한 방법은 해외지점(또는 해외 사업소)을 설치하는 방법과 자회사(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으로 나누어지며, 이에 따라 세법상 규율도 달라지게 됨.

- 해외지점은 모회사와 같은 법인으로 진출지역에서 본사의 모든 업무를 수행하며, 내국법인의 일부이므로 지점의 국외원천소득 및 영업활동에 대한 재무제표는 국내본점과 합산하여 우리나라에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게 됨.¹⁾
- 반면, 자회사는 해외 현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어 본사와는 독립된 별개의 법인체이므로 본사의 업무와 관계없이 독자적인 경영조직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며, 회계상으로 본사와는 별도의 예산을 수립, 집행하고 해외지점과는 달리 국내법인의 법인세 신고시 합산되지 않음.²⁾

1) 지점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해외에서 납부한 법인세등은 국내 법인세 과세시 일정한도 내에서 외국납부세액등으로 공제가 가능함(「법인세법」 제57조제1항).

2) 자회사로부터 모회사가 배당소득 수령시 현지법인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은 직접외국납부세액(「법인세법」 제57조제1항)으로, 자회사가 납부한 법인세 상당액은 간접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함. 간접외국납부세액은 조세조약상 규정이 있으면 「법인세법」 제57조제3항이 적용되며, 조세조약상 규정이 없으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6(「법인세법」 상 한도의 50% 정도)가 적용됨.

- 기업들이 현지법인의 형태인 자회사로 진출하는 이유는 업무의 융통성 면에서 다른 형태에 비해 유리한 측면도 있지만, 중동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는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규제도상 현지법인 설립이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 한편, 지점 형태의 경우 해당 국가에서의 사업이 어려워져 손실이 발생할 경우 모회사의 손금으로 산입이 가능하지만, 자회사 형태의 경우 자회사에 손실이 크게 발생하여 자본잠식 등이 발생하더라도 모회사가 지급한 대여금 등은 대손금과 대손충당금을 통해 손금으로 산입해야 함.

- 대손금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으로 그 금액만큼 손금산입이 가능하지만, 「법인세법」에서는 조세회피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소멸시효의 완성, 채무자의 파산 등 대손의 요건을 엄격히 정하고 있음.³⁾

3)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가지급금(假支給金) 등, 이 경우 특수관계인에 대한 판단은 대여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5의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같은 법 제75조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무역에 관한 법령에 따라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으로 확인된 채권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9의2.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하 이 호에서 "외상매출금등"이라 한다)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한다.
 10.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 또한, 법인은 장래의 대손가능한 금액을 합리적·객관적으로 추산하여 당기비용을 인식함과 동시에 당해 채권의 차감적 평가계정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데,⁴⁾ 「법인세법」에서는 자의적인 충당금 설정 및 대손처리로 인한 비용증가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 및 대손금에 대한 정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 법인이 외상매출금·받을어음·대여금·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에 대한 대손예상액을 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 일정한 범위 내에서 그 계상한 대손충당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으로 산입함.⁵⁾

-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12. 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가.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1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4) 정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인의 채권은 전체적으로 보면 회수되지 않거나 대손될 확률이 경험적으로 계산되는데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회수불능채권이라면 자산가치를 상실하여 별도의 회계반영이 없다면 법인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왜곡 표시하는 결과가 되므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게 됨.

5) 「법인세법」 제34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외상매출금, 대여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貸損)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대손충당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 ② 제1항은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은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고, 상계하고 남은 대손충당금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 그 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해당 대손충당금 중 합병법인등이 승계(해당 대손충당금에 대응하는 채권이 함께 승계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받은 금액은 그 합병법인등이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대손충당금으로 본다.
- ⑤ 제1항을 적용하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충당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⑥ 제1항에 따른 외상매출금, 대여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의 범위와 대손충당금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회사 등 특수관계인에 지급하는 대여금이라 하더라도 법인의 사업과 무관하지 않다면 정상적인 채권으로 보아 대손충당금에 설정할 수 있음.
- 대손충당금 손금산입한도액 = 설정대상채권의 장부가액 × 설정률

[대손충당금의 설정률]

구분	설정률
금융기관 이외의 법인	MAX[1%, 대손실적률]
금융기관	MAX[1%, 대손실적률, 대손충당금적립기준]
* 대손실적률 = 당해 사업연도 대손금/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의 장부가액 (=당기 대손금/전기말 채권잔액)	
* 대손충당금적립기준 =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을 말함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 한편, 2010년대 주요 건설기업의 해외 현지법인은 모회사로부터 대여금을 받아 공사비 등에 사용하였으나⁶⁾ 이후 현지 사정 등으로 인해 공사손실이 지속적으로 누적되는 경우가 발생하였고, 모회사의 대여금은 청산·파산 전에는 대손처리가 불가능하게 되어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⁷⁾
- 사우디 등 중동국가에서는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현지법인 설립이 의무화되어 있거나, 현지법인 설립·현지인 고용 비율 등 현지화가 수주계약요건인 경우가 많아 자회사 형태로 설립하고 모회사에서 운영자금을 대여하는 경우가 많았음.

6) 현지법인의 자금운용에 대해 모회사가 이행보증을 하여 계약을 수주하고 이후 대여금을 통해 해외자회사를 지원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함.

7) 해외건설협회, ‘2023년 세법 건의’ 참고.

- 그러나 현지 자회사가 공기 지연 등으로 대규모 손실이 누적되어 자본잠식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모회사는 사실상 대여금 회수가 불가능함에도 엄격한 대손요건을 충족하기 힘들어 대손충당금을 통한 손금산입 밖에 못하는 실정임.

※ 2023년 상반기 국내 건설기업의 해외사업 수주 실적은 173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4% 늘었으나, 미청구공사 금액은 2021년 10조 9,712억원에서 지난해 13조 1,415억원으로 증가함.⁸⁾

※ 청산절차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현지국가도 있으며, 현지법인을 파산시켜 청산할 경우 해당 국가에서는 추후 공사 수주를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 현실적으로 청산이 어려운 경우도 있음.⁹⁾

- 대손충당금을 통한 손금산입은 대손실적률이 크게 나오지 않는 한 손금산입한도가 채권 장부가액의 1%의 불과하여 이를 통해 상황을 개선하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음.

○ 또한, 모회사가 자회사에 대여한 금원에 대한 이자를 받지 않거나 법규정이 정한 이자율보다 적게 받을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소정의 이자율만큼 모회사에게 이자 수익이 생긴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되므로 모회사는 대여금 이자에 대한 법인세 부담까지 더해지고 있음.¹⁰⁾

8)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과거 사례로 본 해외 건설 잠재 리스크 분석’, 건설동향브리핑 919호, 2023.8.11.

9) 대한경제, ‘인력난 해소·법인세 완화…해외건설 ‘날개’ 달까’, 2023. 7. 28. 기사내용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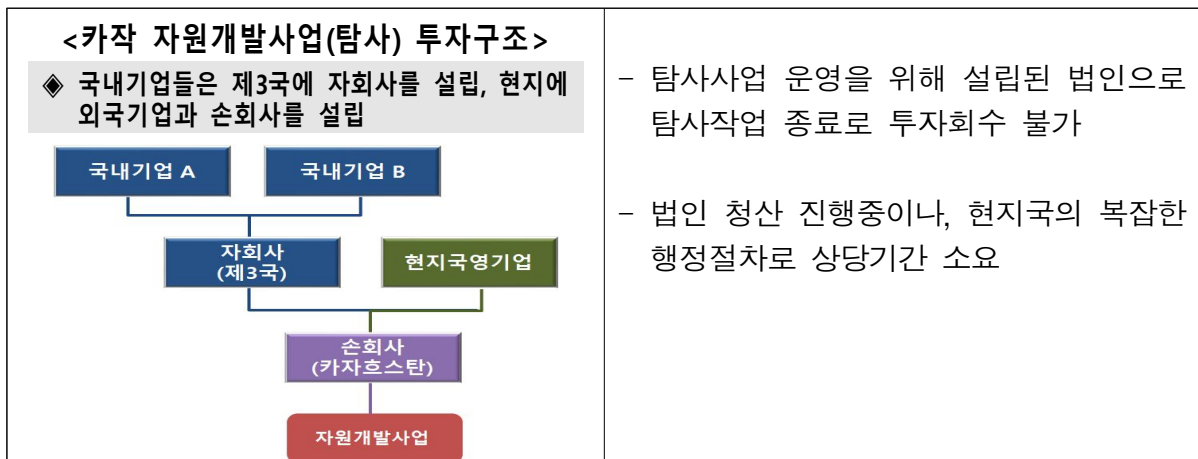
10)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 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외건설사 관련 사례]11)

- 2010년대 초 사우디아라비아에 진출한 A건설사는 현지 법인이 있어야 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 지사가 아닌 자회사 법인을 설립
- 현지 「상법」상 증자 등의 절차가 복잡해 자본금 납입 대신 자금 대여 형식으로 법인 규모를 키웠으나 유가가 급락하면서 사우디 정부의 재정수지 적자가 이어지자 정부의 발주 여력도 떨어져 신규 수주가 끊김¹²⁾
- 결국 법인 청산을 진행 중이지만, 2018년 제정된 사우디 「파산법」에 따른 실제 청산 사례가 없어 행정절차 지연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음
 - 청산에 필요한 법인 납세 증명서 받는데 5년이 걸렸고, 다음 청산절차를 밟는데도 최소 수년이 추가 소요될 전망이며, 실제 청산이 될지 여부도 불분명한 상황
- 국내법에서는 자회사가 법적으로 파산하지 않는한 관련 손실의 손금산입이 불가능하므로 자회사에 대한 대여금의 이자수익 명목으로 지난해 100억원 이상의 법인세를 납부

[해외자원개발기업 관련 사례]



자료: 해외자원개발협회

□ 이에 개정안은 장기간 자본잠식 상태로 채권회수가 어려운 자회사에 대한 대여금 등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를 도입하려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음.

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생략)

11) 한국경제, '중동서 파산은 불가능, 현실 모르는 한국세법...골병드는 건설사', 2023.1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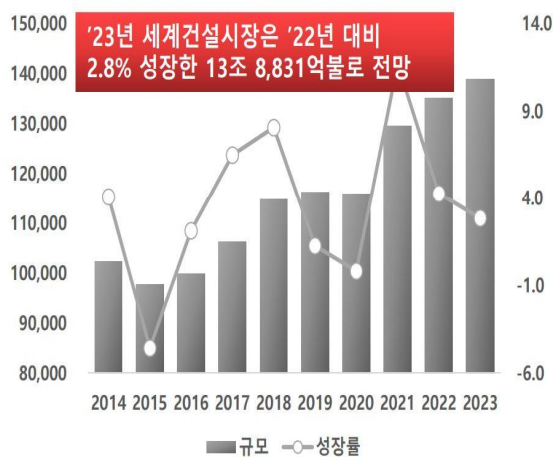
12) 국내 건설사의 중동 수주액 2010년 470억 달러 → 2019년 50억 달러

첫째, 기업이 해외진출을 하면서 해외지사 형태와 자회사 형태에 따라 동일한 손실에 대해 손금 인정, 인정이자에 대한 세금부담 등이 달라지지 않게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조세평등주의 및 과세형평에 부합할 수 있음.

둘째, 해당 제도의 도입으로 현지법인을 통한 해외진출에 대한 기업리스크가 완화되어 사우디 네옴시티,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등 초대형 해외건설사업이나 해외자원개발사업에 국내 기업들이 적극적인 수주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

- 2023년 세계건설시장은 2022년 대비 2.8% 성장한 13조 8,831억 불로 전망되며, 중동시장의 성장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세계건설시장 규모·성장률 추이 및 전망(단위: 억불, %)



자료: 해외건설협회

지역별 건설시장규모 전망(단위: 억불, %)

구분	2022	2023	성장률
중동	6,177	6,943	12.4
아시아	66,431	68,027	2.4
북미·태평양	24,624	25,201	2.3
아프리카	1,107	1,118	1.0
유럽	30,608	31,162	1.8
중남미	6,052	6,380	5.4
합계	134,999	138,831	2.8

- 우리나라의 최근 5년(2018년~2022년)간 해외건설의 총 수주액은 1,511억불, 연평균 수주액은 302억불 수준이며, 2021년 기준 매출액 227억불, 점유율 5.7%로 세계 5위를 유지하고 있음.

2018~2022년 지역별 연평균 수주액 비중(단위: %)	
아시아	40.8
중동	31.4
유럽	10.6
북미, 태평양	7.0
중남미	6.6
아프리카	3.7

2018~2022년 지역별 연평균 수주액(단위: 억불)	
아시아	123
중동	95
유럽	32
중남미	20
북미, 태평양	21
아프리카	11

자료: 해외건설협회

국적별 해외건설 매출 현황

순위	국적	해외매출(억불)	점유율(%)	건설사수
1	China	1,129.5	28.4	79
2	Spain	517.8	13.0	8
3	France	504.3	12.7	3
4	USA	241.9	6.1	41
5	S. Korea	227.3	5.7	12
6	Italy	222.4	5.6	13
7	Turkey	204.4	5.1	42
8	Japan	165.3	4.2	11
9	Netherland	89.7	2.3	3
10	Germany	64.4	1.6	3

자료: 해외건설협회

- 운영석의원안의 경우 해외자원개발사업자에 대해서도 특례를 적용하고 있는데,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확보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자원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인한 투자 위축으로 해외 자원개발투자액은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왔음.

[해외자원개발투자 현황]

(단위: 백만달러)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석유·가스	4,395	3,831	1,802	1,289	1,424	1,392	1,137	1,928
일반광물	1,928	429	594	458	375	669	272	464
합계	6,323	4,260	2,396	1,747	1,799	2,061	1,409	2,392

자료: 해외자원개발협회

[자원개발률]

(단위: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석유·가스	14.4	15.5	14.9	12.7	12.5	13.3	12.	10.73
유연탄	55.4	52.8	49.9	37.6	29.9	32.2	34.3	41.2
우라늄	11.1	4.2	4.0	4.0	3.1	3.3	1.4	-
철	18	15.1	27.9	26.2	31.8	32.0	34.3	34
동	10.7	5.5	6.5	8.0	7.7	10.0	12.2	8.36
아연	21.5	21.2	22.8	20.6	19.9	20.7	21.5	21.6
니켈	61.7	68.9	63.2	61.8	55.2	55.0	47.2	29.7

자료: 해외자원개발협회

- 최근 세일혁명으로 석유·가스 시장구조가 개편되고,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 강화에 따라 천연가스 및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미래자동차, 로봇 등 신산업에 필요한 소재·부품 확보를 위해 리튬·니켈·희토류 등 원료 광물 자원수요가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음.
- 이러한 에너지자원과 관련한 국제질서의 변화에 따라 세계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적극적인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에 비해 자원안보 역량이 현저히 부족한 실정임.¹³⁾

13)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우라늄·니켈 등 6대 전략광종의 자원개발률은 28%(일본 76%, 중국 65%), 리튬·희토류 등 신전략 광물의 자원개발률은 1.8%에 불과함.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장기간 자본잠식 상태의 회수가 곤란한 대여금 등의 채권이 라 하더라도 해외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 개별기업의 판단에 따라 투자한 것이므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회사에 대한 모회사의 채권이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손금산입의 특례를 규정할 경우 기업경영책임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둘째, 대여금의 범위와 관련하여 운영석의원안은 용역제공에 따른 대가를 포함하고 있는데, 해외건설 전문인력에 대한 고용주체가 해외자회사일 경우 국내모회사에서는 대여금 형식으로 이를 지급하고, 고용주체가 국내모회사일 경우 자회사에 대한 용역채권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대여금과 용역제공에 따른 대가는 실질이 유사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셋째, 손금산입 방식과 관련하여 정부안을 제외한 나머지 3개의 안에서는 대여금 등에 대해 사실상 대손을 인정하고 있는데, 사업폐지, 청산 등 법률상·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세법상 대손금¹⁴⁾과는 맞지 않은 측면이 있음.

넷째, 회수곤란한 채권의 요건과 관련하여 조해진의원안과 진선미의원안은 ‘대여금을 제각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해당금액만큼 자회사의 익금에 계상되어 현지에서 법인세가 과세될 우려

14) 「법인세법」 제19조의2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가 있음.

다섯째, 특례의 적용대상과 관련하여 정부안은 ‘2022.12.31.이전에 지급한 회수곤란 대여금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미 정해진 적용대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용하는 특례가 될 우려가 있음.

여섯째, 대여금 등을 손금에 산입하는 기간과 관련하여 정부안은 10년의 기간에 걸쳐 충당금과 상계하도록 되어 있으며, 나머지 3개의 안은 5년간 손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세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정부안의 경우 10년의 기간을 2024. 1. 1.부터 10년간 매년 10%씩 손금산입하고 있는데, 대여금 등이 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 시점이 제각각 다를 수 있으므로 특정시점이 아닌 요건을 충족한 때부터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대여금 등이 회수기일로부터 5년 경과하고 자본잠식상태가 되는 시점이 2026년이나 2027년일 경우 2024년부터 손금산입비율은 매년 10%씩 확대할 필요가 없으며, 특례적용 요건을 충족한 시점부터 기산하는 것이 제도의 정합성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

일곱째, 운영석의원안은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나 국내모회사와 해외자회사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대여

금에 대한 이자율을 낮게 적용하여 조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존재
하므로 부당행위계산에 관한 규정은 특별 적용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문 의 처

02)6788-5157
